

KB골든라이프 연금저축신탁 핵심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연금저축신탁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구 분	내 용
상 품 명	▪ 연금저축신탁
상품특징	▪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적립한 후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불특정금전신탁

2 거래 조건

☞ 다음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연금저축신탁약관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납입한도	▪ 매회 적립금 1만원 이상 자유적립식으로 연간 1천8백만원 이내																			
세액공제	▪ 해당연도 납입금액 ^(주1) (최대 4백만원 ^(주2))의 13.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주1)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순납입액(해당연도 납입금액 - 해당연도 납입금액으로부터 인출한 금액) (주2)총급여액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																			
적립기간	▪ 최소 5년 이상 만 55세가 되는 때까지																			
연금기간	▪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연 단위)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적립기간 적용 배제)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주1)} \text{ 현재 신탁계좌의 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주2)}} \times 120\%$ (주1)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1월 1일 (주2)적립기간 5년 이상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 모두 충족되는 후부터 1년차 적용 후 매년 누적합산. 다만, 연금 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연금수령한도 미적용																			
인출순서	▪ 적립기간 및 연금기간 중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 <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2">연금신탁계좌</th><th>연금수령</th><th>연금외수령</th></tr></thead><tbody><tr><td rowspan="3">과세제외 금액</td><td>당해연도 납입금액(①)</td><td rowspan="3">과세제외</td><td rowspan="3">과세제외</td></tr><tr><td>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초과금액 (②)</td></tr><tr><td>기타 과세제외 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③)</td></tr><tr><td>이연퇴직소득 (④)</td><td>이연퇴직소득세 70%</td><td>이연퇴직소득세</td></tr><tr><td>과세대상 금액</td><td>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⑤)</td><td rowspan="2">연금소득세 (3.3 ~ 5.5%) ※지방소득세 포함</td><td rowspan="2">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td></tr><tr><td></td><td>신탁이익(⑥)</td></tr></tbody></table>	연금신탁계좌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과세제외 금액	당해연도 납입금액(①)	과세제외	과세제외	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초과금액 (②)	기타 과세제외 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③)	이연퇴직소득 (④)	이연퇴직소득세 70%	이연퇴직소득세	과세대상 금액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⑤)	연금소득세 (3.3 ~ 5.5%)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신탁이익(⑥)
연금신탁계좌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과세제외 금액	당해연도 납입금액(①)	과세제외	과세제외																	
	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초과금액 (②)																			
	기타 과세제외 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③)																			
이연퇴직소득 (④)	이연퇴직소득세 70%	이연퇴직소득세																		
과세대상 금액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⑤)	연금소득세 (3.3 ~ 5.5%)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신탁이익(⑥)																			

☞ 다음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연금저축신탁약관에 따릅니다.

구 分	내 용																	
원본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계약의 해지, 계좌이체 또는 종료될 때 순적립누계액(총납입액에서 인출한 납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전 (단, 세금 또는 수수료 등의 발생으로 원금이 감소하는 경우 제외) 																	
이익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가격 방식에 의한 실적배당 																	
상품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형 : 채권, 기타자산 등 100% 이내 안정형 : 주식 및 관련상품 10% 이내 / 채권, 기타자산 등 100% 이내 																	
신탁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0.5% (채권형, 안정형) 																	
양도 및 담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 : 불가능 담보제공 : 가입자 본인 명의 담보대출을 위한 경우 가능 																	
연금수령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중 선택 가능 																	
계좌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 가능 다른 연금저축계좌 취급 금융기관으로 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체 신청하여야 하며, 이체신청의 취소는 신청 당일만 가능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3.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금액이 '13.3.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간에 이체되는 경우 (단, 연금수령요건을 모두 갖춘 가입자의 전액이체는 허용)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이체신청거절 통보가 있는 경우 기타 법적인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중도해지 및 일부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도해지 또는 일부 금액의 인출 해지 또는 일부 금액의 인출 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채권형) 또는 제4영업일(안정형)에 지급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대상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적립기간중 인출 (연금외수령)</th> <th colspan="2">연금수령기간 중 인출</th> </tr> <tr> <th>연금수령한도이내(연금수령)</th> <th>연금수령한도초과(연금외수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기타소득세^(주1) 16.5%</td> <td>연금소득세^(주2) 3.3%~5.5%</td> <td rowspan="4">기타소득세^(주1) 16.5%</td> </tr> <tr> <td>연 령</td> <td>세 율</td> </tr> <tr> <td>만 70세 미만</td> <td>5.5%</td> </tr> <tr> <td>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td> <td>4.4%</td> </tr> <tr> <td>만 80세 이상</td> <td>3.3%</td> </tr> </tbody> </table> <p>(주1)기타소득세 = {실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신탁이익} X 세율(16.5%, 분리과세) (주2)연금소득세 = {실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신탁이익} X 세율(3.3~5.5%, 종합과세)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출할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을 먼저 인출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됩니다. 이연퇴직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수령한도이내 연금수령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연금수령한도초과 연금수령 : 이연퇴직소득세 연금외수령 : 이연퇴직소득세 <p>※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 별도</p>		적립기간중 인출 (연금외수령)	연금수령기간 중 인출		연금수령한도이내(연금수령)	연금수령한도초과(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 ^(주1) 16.5%	연금소득세 ^(주2) 3.3%~5.5%	기타소득세 ^(주1) 16.5%	연 령	세 율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적립기간중 인출 (연금외수령)	연금수령기간 중 인출																	
	연금수령한도이내(연금수령)	연금수령한도초과(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 ^(주1) 16.5%	연금소득세 ^(주2) 3.3%~5.5%	기타소득세 ^(주1) 16.5%																
	연 령		세 율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 다음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연금저축신탁약관에 따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천재지변 ②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④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⑤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단,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사유③의 인출금액은 [2백만원+{의료비(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한함)+{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월수(1월미만은 1월)×1백5십만원}]}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제한 ▪ 과세방법 : 연령별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3.3%~5.5%, 무조건 분리과세)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의 70%로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별도)
배우자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사망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에 한하여 계좌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승계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 계좌의 가입일은 사망한 가입자가 가입한 날을 적용합니다.
예금자보호	<p>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p> <p>※ 세금 또는 계좌이체수수료 발생 등 관련법률에 의한 세금은 원본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 연금수령개시신청 및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와 다른 연금계좌의 「연금납입 확인서」 및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신탁은 소득세법 등 관련세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기간 중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해당연도 납입금액에서 해당연도 납입금액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연금수령을 신청하는 해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까지의 순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 신탁은 이전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신청 연도에 납입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된 금액은 그 신청연도의 납입금액과 합산하여 세액공제 혜택 및 납입한도가 적용됩니다.
- 이 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신탁의 기준가격은 영업점 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세대상금액을 연금외수령(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중도해지 또는 일부인출)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세 납부로 인해 신탁 원본에 미달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설명서에서 안내한 세금제도 또는 상품내용을 관계법령이나 약관 등에서 변경한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 연간 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별도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신탁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의 정보는 국민은행 인터넷홈페이지(www.kbstar.com) 및 전국은행 연합회(www.kfb.or.kr)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국민은행 신탁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